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8. 28  
산업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發議日字 : 2001. 8. 2
- 나. 發議者 : 서산시장
- 다. 回附日字 : 2001. 8. 21
- 라. 上程日字 : 2001. 8. 28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環境保護課長 魯商根)

가. 改正理由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관련법령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된 규정을 시행에 필요하게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규정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은 별표4의 제3호 라목의 사업장을(일반음식점 영업중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해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함(안 제2조 제4호 제11호).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함 (안 제5조 제2항).
- 일시적으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함 (안 제6조 제6항).
-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하도록 정함 (안 제8조 제5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수수료 감면토록 정함(안 제17조 제1항).
-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자 등으로 정함(안 제19조 제2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원/톤)=봉투 ℓ 단가(원/ℓ)×1,000(kg/톤)0.6(kg/ℓ)변경 조정함 (안 별표 9의제2호),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관련법령등이 일부 개시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이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등을 정비·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 “다량의 생활폐기물”의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일련의 공사·작업등에서 5톤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톤당 10,000원에서 21,000원 110% 인상하였으나 그동안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환경고시 처리단가 67,000원과 전국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건축폐기물 처리단가 40,304원의 5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현실상으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클것으로 우려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의 인상요인이 있을시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수수료 감면에서 제17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한하여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생계수단에 필요한 보상금(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장구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2등급으로 구분되며, 10등급 이상인 대상자를 생계 곤란자로 책정되는 바, 보훈처로부터 통보에 의해 감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1. 5. 25 서산시공고 179호로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서산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및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으로써

- 상위법 범위안에서 개정되는 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 신뢰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제17조 제1항 중 제4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리·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쓰레기봉투의 판매과정에 대하여 점검하여 판매소에서 기피하지 않고 시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7조 제1항중 제4호 “리장·통장·반장, 새마을지도자”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1.~3. (생략) (신설)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좌동) 1.~3. (좌동) 4. 리장·통장·반장 새마을지도자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안번호	제 <u>    </u>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01. . . (제 회)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u>  </u> 월 <u>  </u> 일

#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0 호
----------	---------

제출년월일 : 2001. 4. 2.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과 절차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 다량폐기물로 명명되어 오던 집수리등 소규모 건설공사로 인해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의 명칭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새로이 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대상자 등을 매분기마다 파악한후 수수료 감면 신청을 받은 뒤 분기 1인당 100리터 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지급토록 함 (단. 통·리·반장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 (이하"공사발주자)가 설치하도록 함

## □ 기타 참고사항

-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원안가결 : 2001. 4. 24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 : 2001. 4. 27
- 입법예고 : 2001. 5. 25 ~ 6. 13 (20일간) - 의견없음
- 관련법규
  -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3항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제1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제1항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라"목의(나)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시행규칙 별표4의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사업장”을 “시행규칙 별표4의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사업장(다만,일반음식점영업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이하“공사발주자”라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중 “일시적으로 다량의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의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을 각각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시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퍼센트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한해 지급할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상실자
3.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분기100리터 범위내에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배부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출자가 직접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9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중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5조관련)

$$\text{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원/톤)} = \text{봉투 l 단가(원/l)} \times 1000(\text{kg/톤})/0.6 (\text{kg/l})$$

- ※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1톤 초과시에는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한다.





##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지급신청서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구분 :

리터구분	신청량(l)	비고

상기와 같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귀하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생략)</p> <p>1.~3. (생략)</p> <p>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의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5.~10.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의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 (다만,일반음식점영업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5.~10. (현행과 같음)</p> <p>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해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5조(생략)</p> <p>①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이하“공사발주자”라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p>
<p>제6조 ①~⑤ (생략)</p> <p>⑥일시적으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생활폐기물 매립장관리인(관리인이 없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관</p>	<p>제6조 ①~⑤(현행과 같음)</p> <p>⑥-----공사장생활폐기물-----</p> <p>-----공사장</p> <p>생활폐기물-----</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신고서 접수시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의 혼합배출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u>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u> 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장 지정관리인이 있는 매립장은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수수료를 납부후 처리할 수 있다.</p>	<p>----- -----공사장 -----생활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 ----- -----</p>
<p>제8조 ①~④ (생략) ⑤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 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li> <li>2. 천재지변으로 재력상실자</li> <li>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7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 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별지제 19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li> <li>2. 천재지변등으로 재력상실자</li> <li>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li> <li>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20리터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배부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분기100리터 범위내에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배부한다.</p>
<p>제19조 ① (생략) 1. (생략) 2. <u>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 일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u></p>	<p>제19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배출자가 직접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u></p>
<p>제31조 ①(생략) 1. ~7. (생략) ② <u>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u></p>	<p>제31조 ①(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② &lt;삭제&gt;</p>

[별표 9]

현 행					개 정 안	
2.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5조관련)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제15조관련)	
대 상	기준	처리수수료(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다 량 생활폐기물	톤당	10,000	6,000	4,000		
※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력으로 상차시 수집·운반비의 100%를 가산 정수할수 있다. 3. 1톤 초과시에는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한다.					$\text{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원/톤)} = \text{봉투 l 당가(원/l)} \times 1000(\text{kg/톤})/0.6(\text{kg/l})$ ※ 주) 1.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톤 초과시에는 수수료 금액을 100kg당 비율로 환산하여 가산한다.	

[별지제1호서식]

(제6조관련)

현 행				
(제6조관련)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서				
배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배출내역	배출장소			
	폐기물명		양	톤
	폐기물명		양	톤
<p>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배출자</u>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 (인)</p> <p>○○○○읍·면·동장 귀하</p>				

개 정 안				
(제6조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서				
배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배출내역	배출장소			
	폐기물명		양	톤
	폐기물명		양	톤
<p>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u>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 (인)</p> <p>○○○○읍·면·동장 귀하</p>				

